



유럽의 기후법 제정과 7월 발표될 정책들에 주목

1. 법제화된 유럽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

- 6월 28일 유럽의회에서 유럽 기후법이 통과. 각 국가 별 서명과정을 거친 뒤 공식적으로 발효됨
- 해당 법안은 최근 상향 조정된 유로존의 온실가스 목표(30년까지 90년 대비 55% 감축, 50년까지 순제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

2. 7월 14일 유럽의 정책 패키지 발표에 주목

- 기후법의 제정과 더불어 오는 7월 14일에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개정된 정책 패키지, 'Fit for 55'도 발표될 예정
- 여기에는 ETS의 개정, 에너지 지침 개정, 자동차 CO2 배출 관련 규정 개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더불어 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발표될 예정

3.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CB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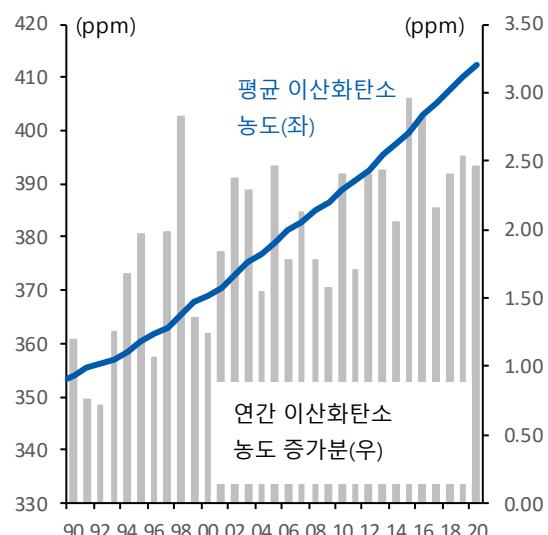
- CBAM은 유로존의 ETS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유로존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주요 경제권에 비해 월등히 높게 형성
- 유로존 탄소 배출권은 최근 경기 현황보다 강화되고 있는 제도를 반영해 서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쉽게 하락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 유럽의 정책에서 파생될 수 있는 실질적 부담은 교역 상대국 기업들의 환경문제 대응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1. 법제화된 유럽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

6월 28일 유럽의회에서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이 통과됐다. 이 법은 2030년까지 EU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net-Zero)를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제정됐다. 나아가 2050년 이후 마이너스 탄소 배출을 추구한다. 해당 법안은 각 회원국들의 공식 서명 과정을 거친 후 최종 발효된다.

EC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유로존 전체 총량 관점에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로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2023년 9월 그리고 이후 매 5년마다 EU와 국가 차원의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유럽 과학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을 설치해 향후 EU의 조치 사항들에 대한 권고 및 제언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순 배출량 관점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감축 노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 포집에 대한 225Mt의 제한을 설정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유럽은 이미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5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강화된 목표(기존 목표치는 40%)를 제시했고, 이번 기후법 통과를 통해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행동에 법적인 구속력이 부여됐다. 즉, 도덕적인 관점이 아닌 법적인 구속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차트1] 지난 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도 CO2 농도는 증가. 탄소 중립을 넘어서 마이너스 탄소 배출에 도달할 필요



자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지난 28일 유럽에서 제정된 기후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

항목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0년 대비 55% 이상 감축. 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50년 이후 마이너스 탄소 배출 추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는 모든 관련 정책 도구를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안을 제안 23년 9월, 그리고 이후 5년마다 EU 및 국가 단위의 조치 사항들에 대해 평가 행동이 탄소 중립 목표에 일치하지 않는 회원국에게 권고사항을 제시 과학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조언을 실시 산업 부문별 협조를 통해 각각의 로드맵 도출 마이너스 탄소 배출을 추구하기 위해 탄소 포집의 총량을 225MT로 제한

자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2. 7월 14일 유럽의 정책 패키지 발표에 주목

지난 4월에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강화된 유로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앞서 살펴 본 기후법을 통해 강제된 상황이다.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에 비해 강화된 유로존의 정책 패키지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유럽 의회가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기존에 비해 강화된 정책 패키지인 'Fit for 55'가 오는 7월 14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 패키지에는 ETS(온실가스 거래 시스템)의 개정, 2030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 에너지 지침 및 에너지 효율성 지침 수정안, 에너지 부문의 메탄가스 배출 감소 지침, 신형 승용차 및 경상용차에 대한 CO₂ 배출 기준 개정안 등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내용들도 관심이 있지만, 유로존과 교역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CBAM(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즉, 탄소 국경세에 대한 내용들도 발표될 예정이란 점에서 더욱 눈길이 간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CBAM은 2023년부터 부분 도입이 시작될 예정이며, 유럽의 ETS가 적용되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초에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품에 포함된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유럽의 ETS 가격 변화를 반영한 탄소 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차트3] 7월 14일 발표될 정책 패키지 'Fit for 55'에 포함될 주요 사안들. 폭 넓은 범위가 포함되어 있음

Fit for 55에 포함될 내용	
해상, 항공 부문을 포함한 EU ETS의 개정	적용대상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의 도입	도입시기
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 설정	온실가스 측정
에너지 관련 세금 지침 개정	적용 방법
2030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침 수정	
2030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애너지 효율성 지침 수정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감소	
토지 사용 및 임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정 개정	
대체연료 인프라 배치에 대한 지침 개정	
신형 승용차/경상용차에 대한 CO ₂ 배출 성능 기준 규정 개정	

자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7월 14일 발표될 CBAM 법률(안)의 주요 내용.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주 베이스에 대사관이 게시)

항목	내용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의 수입에 적용 적용대상 수입품과 면제 국가 등은 annex를 통해 따로 제시
도입시기	23년부터 일부 조항 도입. 전환기간 설정
온실가스 측정	구체적인 방법론은 annex에 제시되어 있으며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한 측정.
적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CBAM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사전에 CBAM certificate를 구매 해당 certificate의 가격은 EU ETS 주간 평균 가격에 근거해 책정 대상 수입품이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 감면 요청 가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치

자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3.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CB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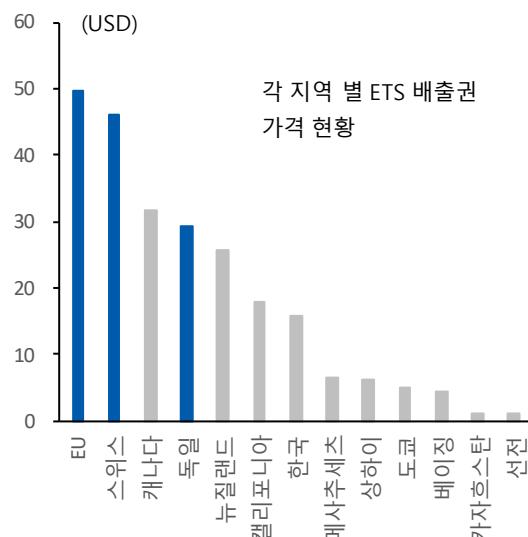
결국 탄소국경세의 도입과 이에 따른 산업 측면의 비용 부담 발생이 기정 사실화 된 상황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럽의 CBAM에는 유로존의 ETS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최근 유로존의 탄소 배출권 가격 흐름을 보면, 경기 상황을 반영하면서 움직였던 과거의 궤적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며 지난해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5월 초에는 YTD +70% 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고점 부근에서의 등락을 이어가며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올해부터 유로존의 ETS는 phase 4 단계에 진입하는데 13~20년까지 진행됐던 phase 3에 비해 연간 무상 배출 할당량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쉽게 하락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큰 모습인데, 유럽의 가격이 여타 지역에 비해 차별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결국 CBAM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기타 지역의 배출권 가격도 상승하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유럽의 정책적 움직임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담 요소들은 교역 상대국 기업들의 환경문제 대응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차트5] 경기 현황과 무관한 급등세를 보였던 유로존 탄소 배출권 가격. 최근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차트6] 주요 경제권의 ETS 가격(WB 의 4월 집계 기준) 비교. 유럽 지역의 배출권 가격이 차별적으로 높음



자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Key Chart

28일 확정된 유로존 기후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0년 대비 55% 이상 감축. 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50년 이후 마이너스 탄소배출 추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는 모든 관련 정책 도구를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안을 제안 23년 9월, 그리고 이후 5년마다 EU 및 국가 단위의 조치 사항들에 대해 평가 탄소 중립 목표에 미진한 회원국에게 권고사항을 제시 과학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조언을 실시 산업 부문 별 협조를 통해 각각의 로드맵 도출 마이너스 탄소 배출을 추구하기 위해 탄소 포집의 총량을 225MT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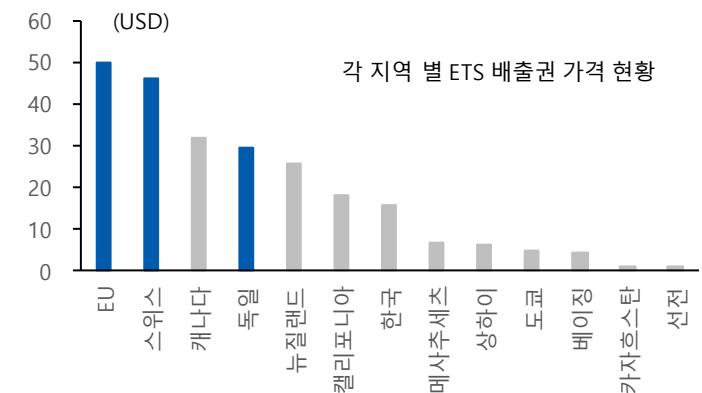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7월 14일 발표될 유로존 CBAM에 대해 알려진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의 수입에 적용 적용대상 수입품과 면제 국가 등을 annex를 통해 따로 제시
도입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부터 일부 조항 도입. 전환기간 설정
온실가스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방법론은 annex에 제시되어 있으며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한 측정.
적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CBAM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사전에 CBAM certificate를 구매 certificate의 가격은 EU ETS 주간 평균 가격에 근거해 책정 대상 수입품이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 감면 요청 가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로존의 CBAM은 전세계에서 제일 비싼 유로존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